
 <b>방송통신위원회</b>	<h1>보도자료</h1>	 <b>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b>
	2021년 2월 24일(수)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김우석 과 장 (☎2110-1420) 이선아 사무관 (☎2110-1423)		

## 방통위,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 허가 정책방안 수립

### - 신규사업자 허가로 주민 참여형 지역밀착 매체 저변 확대 기대 -

앞으로 우리 이웃의 생생한 이야기를 라디오를 통해서 듣고, 또 내가 언제든지 방송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동네 방송인 공동체 라디오 방송이 많이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021년 2월 24일(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공동체라디오방송 사업자 신규 허가를 위한 정책방안을 의결하였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은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소출력 라디오방송으로, 2005년 최초 시범방송 이후 현재 전국에 7개\* 방송사가 운영 중이다.

\* 서울 관악, 마포, 경기 성남, 광주 북구, 대구 성서, 공주, 영주

공동체라디오는 광역단위의 방송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소규모 공동체의 현안과 행사, 소식을 소재로 주민이 직접 방송을 제작하는 지역밀착형 미디어로서 주민자치를 위한 공론의 장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시의성 있는 지역정보를 전달하고, 주민들의 유대 형성을 통해 재난 극복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도입 이후 현재까지 신규사업자 선정이 없어 저변확대 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참여 미디어 문화 확산에 부응하기 위해 신규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공동체라디오의 저변 확대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방송접근권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3월 중 신규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고, 심사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신규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사업자 수는 미리 정하지 않고, 가용주파수 상황, 지역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적격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신규허가를 통해 공동체라디오방송이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취약계층의 방송접근권 향상에 기여하는 지역밀착형 매체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붙임 :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사업자 선정방안 개요. 끝.

(붙임)

## 공동체라디오 신규사업자 선정방안 개요

- (허가대상 방송사업)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방송법 제9조제11항)
- (방송사업자 수) 허가 사업자 수를 특정하지 않음
  - 가용주파수 상황과 지역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격사업자에 허가 권을 부여
- (방송권역) 시, 군, 구 행정구역 단위 허가를 원칙으로 하되, 주파수 환경과 지역·문화·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할 수 있음
  - ※ 실제 방송가청 권역은 허가 주파수와 출력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주파수, 출력 및 유효기간) 주파수는 FM 대역(88~108MHz), 허가 출력은 10와트 이하, 허가 유효기간은 5년 범위 내에서 허가
- (신청 주체) 비영리 법인(설립예정 법인 포함)
  - 정부, 지자체, 종교단체, 정당, 영리목적 사업자 배제(동법 제8조제14항)
  - 공동체라디오방송국 1개 초과 소유 금지(동법 제8조제15항)
- (재원) 사업자 자체조달(자율 경영) 원칙
  - 기부금, 지방자치단체보조금, 방송광고수익금, 협찬고지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방송법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
- (방송 편성 등)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60% 이상을 허가받은 주된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동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 매일 6시간 이상 방송실시,
  - 음악, 문화, 지역 관련 소식 등 정보 제공
  - 방송법시행령 제50조제2항의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편성 금지